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의3(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③(적용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